

대 구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06가단69988 손해배상(기)
원 고 주식회사 ○○렌트카
대구 ○구 ○○동 35-9
대표이사 이○○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○○
피 고 이○○
대구 ○구 ○○동 573 ○○아파트 ○동 ○○○호
변 론 종 결 2007. 9. 4.
판 결 선 고 2007. 10. 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1,956,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
제일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05. 6. 2. 21:00경 원고의 반야월영업소에서 운전자가 만 21세 이상일 경우에만 자동차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구 33허6381호 EF소나타 차량(이하 '이 사건 차량'이라 한다)을 렌트하였다.

나. 피고는 2005. 6. 8. 이 사건 차량을 동생 이○○(당시 만 19세)에게 빌려주었는데, 이○○는 같은 날 14: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소재 파계사 삼거리 에 이르러 운전 부주의로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를 일으켰고, 위 사고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허○○ 등이 상해를 입었으며,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상해를 입은 탑승자들에게 합계 61,956,990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.

다. 원고는 위 보험회사와 사이에 총 발생 사고의 손해액에 따라 원고 소유의 렌트카 전부에 관한 보험료의 할인·할증율을 평가하는 단체할인·할증평가 방식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2006. 4. 1.부터 2007. 3. 31.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의 단체할인·할증율은 85%(수정순경과 보험료 447,592,000원과 사고로 인한 손해액 427,377,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정순경과 손해율 81.6%를 보험회사의 영업용자동차보험 할인·할증 적용율표에 적용한 결과)이나, 이 사건 사고로 단체할인·할증율이 95%(수정순경과 보험료 447,592,000원,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책임보험금이 증가한 427,377,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정순경과 손해율 95%를 적용한 결과)로 높아지는 바람에 2006. 4. 1.부터 3년간 원고에 대한 예정 보험료 인상액은 합계 104,013,990원에 달하게 되었다.

[인정근거 :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3 내지 5, 을 18, 증인 나양수, 보험개발원장, 현
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연령 미달로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○○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전대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2006. 4. 1.부터 2007. 3. 31.까지 원고 소유의 렌트카 206대에 관한 보험료가 241,071,714원에서 321,428,952원으로 80,357,238원이 증가되었고, 그로 인해 원고는 보험료 증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중 61,956,99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보험회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징수보험료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상 이 사건 차량에 종합보험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보험료의 할증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(이 사건 차량에 종합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료 산정시 손해액으로 평가된다고 보임),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연령의 동생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전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것과 보험료 인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, 가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, 원고 소유의 렌트카 206대 전부에 관한 보험료의 할증은 사고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, 원고가 단체할인·할증평가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있어 피고의 계약위반에 기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206대에 보험료가 단체로 할증되고,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지급된 책임보험금 정도로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만큼 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(이 사건 사고 외에 다

른 렌트카로 인한 손해액 365,420,270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됨)에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기현 _____